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5.

발 의 자:정희용·박덕흠·우재준

이인선 • 박수민 • 박준태

김선교 • 주호영 • 김성원

장동혁 · 김상훈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생계지원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.

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,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합당 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3 등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"배우자"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.

제3조 중 "참전유공자"를 "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"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"참전유공자"를 각각 "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하나"를 "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호"로, "참전유공자"를 "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"로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국가유공자"를 "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보훈보상대상자"를 "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참전유공자"를 각각 "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참전유공자"를 각각 "참전유공자"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참전유공자"를 "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

-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8.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9. 배우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10.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
 - 3. 추가등록결정

제6조의3제1항 중 "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
- 2.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)

제8조의6제1항제2호 중 "배우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" 를 "배우자"로 한다.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참전유공자가 받을"을 "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받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참전유공자"를 "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"로,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또는 제2항"으로 한다.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 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 제3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참전유공자"를 각각 "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"배우자"란 참전유공자의 배
	우자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
	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
	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
	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.
제3조(적용 대상자) <u>참전유공자</u> 로	제3조(적용 대상자) <u>참전유공자</u>
서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	또는 그 배우자
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	
다.	
제5조(등록 및 결정) ① <u>참전유공</u>	제5조(등록 및 결정) ① <u>참전유공</u>
<u>자</u> 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	<u>자 또는 그 배우자</u>
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	
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	
	<u>.</u>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	②
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참</u>	<u>참</u>
<u>전유공자</u> 로서의 요건을 확인한	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.	

-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<u>하나</u>의 요 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<u>참전</u> 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.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<u>국</u>
 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- 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<u>보훈보상대</u> 상자로 등록된 사람
- 3. (생략)
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,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사실을 알려야 한다.

.
③
<u>하나 또는 같은</u>
조 제3호
<u>참전유공자 또</u>
는 그 배우자
<u>.</u>
1
국
_
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2
보훈보상대
<u>상자 또는 그 배우자</u>
3. (현행과 같음)
4
<u>참전유</u>
공자 또는 그 배우자
<u>참</u>
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

⑤ (생략)

제5조의2(신상 변동의 신고 등)
① 제5조에 따라 <u>참전유공자</u>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 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 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<u>신</u> 설> <신 설>
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 유를 알려야 한다.

1. • 2. (생략)

<신 설>

<u>3.</u> (생 략)

③ (생략)

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2(신상 변동의 신고 등)
① <u>참전유공자</u>
<u>또는 그 배우자</u>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
<u>된 경우</u>
9. 배우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
10.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
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
<u> </u>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추가등록결정
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3(생계지원금) ① 80세 이 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 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제8조의6(보훈재가복지서비스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 여 가정에서 가사활동, 건강관 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 우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ㅣ 제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
- ② · ③ (생 략)

제6조의3(생계지원금) ① <u>다음 각</u>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
람
1.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
2.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
경우에 한정한다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6(보훈재가복지서비스) ①
1. (현행과 같음)
2 <u></u> <u></u> 刊
<u> 우자</u>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 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39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.
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(생략)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<u>참전유</u> 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<u>제2항</u>에 따라 이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의 배제) (1)
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가
<u>받을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
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
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
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
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
를 하지 아니한다.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<u>4</u>
<u>참전유</u>
공자 또는 그 배우자
<u>제3항</u>
·

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 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 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 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39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주민등록정보, 가족관계등록사항, 군복무에 관한 자료, 국세·지방세에관한 자료, 소득·재산에 관한자료, 국민연금·건강보험등 각종 연금·보험에 관한자료와 출입국정보등을 관계기관의장에게 요청할수 있다.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.

 제5조에 따른 <u>참전유공자</u>의 등록에 관한 사무

•	
<u>(5)</u>	
제1항 또	.는 제 <u>2항</u>
제39조의2(자료의 ①	
· 	
<u>,</u>	
	- <u>참전유공자 또</u>

- 2. 제5조의2에 따른 <u>참전유공자</u> 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
- 3. ~ 8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

- 2. -----<u>참전유공자</u> 또는 그 배우자-----
- 3. ~ 8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